

제2023-76호 2023년 8월 25일(금)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3-371호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1
○ 여수시 고시	제2023-372호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
○ 여수시 고시	제2023-373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23-374호	도로지정 공고(화양면 나진리 산34-1번지 외 4필지)	5
○ 여수시 고시	제2023-375호	견인보관소 장기미반환차량 인수통지 공시송달 공고	7
○ 여수시 고시	제2023-37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9
○ 여수시 고시	제2023-37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0
○ 여수시 고시	제2023-38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12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3-2285호	여수시 어린이도서관 명칭 공모 수상작 선정 결과 공고	13
○ 여수시 공고	제2023-2381호	불법 양식시설물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 공시송달 공고	14
○ 여수시 공고	제2023-2397호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공고	16
○ 여수시 공고	제2023-2405호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9
○ 여수시 공고	제2023-2413호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5
○ 여수시 공고	제2023-2414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39
○ 여수시 공고	제2023-2415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 공고	40
○ 여수시 공고	제2023-2416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 공고	41
○ 여수시 공고	제2023-2417호	도로지정 공고(돌산읍 평사리 928-68번지)	42
○ 여수시 공고	제2023-2419호	2023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정가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44
○ 여수시 공고	제2023-2423호	도로구역 결정 읍춘중학교 앞 도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45
○ 여수시 공고	제2023-2425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50
○ 여수시 공고	제2023-2428호	도로지정(변경) 공고(소라면 복산리 산 388-15번지)	51
○ 여수시 공고	제2023-2433호	2022년도 자작제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53
○ 여수시 공고	제2023-2435호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공고	54
○ 여수시 공고	제2023-243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 공고	57
○ 여수시 공고	제2023-2440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60
○ 여수시 공고	제2023-2441호	도로지정(변경) 공고(돌산읍 평사리 1252-40번지)	72

○ 여수시 공고	제2023-2442호	도로지정 공고[소라면 대포리 825-14번지]	74
○ 여수시 공고	제2023-2446호	「해양경찰학교 여수시 이전사업 보상업무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76
○ 여수시 공고	제2023-2447호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공고	80
○ 여수시 공고	제2023-2448호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공문 반송에 따른 공사송달 공고	83
○ 여수시 공고	제2023-2453호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명단 공고	84
○ 여수시 공고	제2023-2457호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공고	86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 8.24.

여 수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178	6	국지 도로	155	소로2-1073 (상암동 1374)	소로2-1072 (상암동 1230-3)	일반 도로	-	여고-487 (21.11.11.)	-
변경	소로	3	1178	6	국지 도로	170	소로2-1073 (상암동 1374)	소로2-1072 (상암동 1230-3)	일반 도로	-	여고-487 (21.11.11.)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178	소로3-1178	· 노선 변경 - 기정 : L=155m, B=6m - 변경 : L=170m, B=6m	상암동 읍동마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개설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

2.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안) 도면: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061-659-40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 8. 24.

여 수 시 장(인)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 조서

■ 도로 결정 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1218	6	국지 도로	110	소로1-10 (오천동 341-9)	중로2-34 (오천동 350-7)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1218	· 신설 · L=110m, B=6m	오천동 몽돌해변 진입부 도로 확장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2.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안) 도면: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061-659-40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18.

여 수 시 장 (인)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55~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925-3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곡길 46	20230818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75-7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상하동길 120	20230818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569-7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650-1	20230818		20091013	향일암으로 가는 도로	
건물번호변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둔전길 78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둔전길 80	20230818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37-543	전라남도 여수시 국포1로 48 (국동)	20230818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37-543		20230818	건축물말소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여수시공고제2023-374호]

도로지정공고

여수시화양면나진리산34-1번지건축신고사항과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같은법제45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도로로지정·공고합니다.

2023. 7. 3.

여 수 시 장

1. 위 치: 여수시화양면나진리산34-1번지의외4필지
2. 도로면적: 482㎡
3. 도로길이: 120.5m
4. 도로폭: 4m
5. 지번별도로지정조서

6. 관련도서: 별첨참조

견인보관소 장기미반환차량 인수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단속 및 견인 후 1개월 이상 장기보관중인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35조에 따라 차량소유주에게 자동차인수 및 자진처리를 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분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8. 22. ~ 2023. 9. 8.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명칭 : 견인보관소 장기미반환차량 인수통지 공시송달
4. 보관장소 : 여수충무레카(☎061-642-0108)
5. 문 의 처 : 여수시청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061-659-4162)
6. 공고내용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3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 등) 될 수 있음을 통보하오니 차량을 즉시 인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관한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3년 8월 22일

여 수 시 장

견인보관소 장기미회수차량 인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현황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명	소유자 / 법인 / 대표자	주민/외국인/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사용본거지	견 인 장 소	보 관 장 소	보 관 일 시	반 송 사 유
1	30러5508	로체	J***** B***** U**-R*****	850407-5*****	전라북도 군산시 분말2길 **-* ***호(오식도동)	수정동 321-1앞 횡단보도	여수시 연등동 728-15 (☎061-642-0108)	2022.8.29.	폐문부재

여수시 고시 제2023 - 37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1-58	2023. 8. 24.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하수도과)	'21. 7.	'24. 5.	여수시 학동 201번지 일원	도원사거리 일원 하수도 정비사업

2023. 8. 24.

여 수 시 장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24.

여 수 시 장 (인)

○ 도로명주소(부여)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55~335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웅천동 1782-2	전라남도 여주시 웅천2길 5-8 (웅천동)	20230824	20140219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웅천 고유명칭 활용)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화양면 창무리 289-5, 58, 59-1, 289-1	전라남도 여주시 화양면 화양로 1740	20230824	20091013	도로가 지나는 지역 화양면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소라면 복산리 522	전라남도 여주시 소라면 풍류길 14	20230824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오천동 233-10	전라남도 여주시 망양로 519 (오천동)	20230824	20091013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길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아름다워 부여	

여수시 고시 제2023 - 38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합니다.

승인번호 (승인일)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 목적	점용·사용 면적(㎡)	점용·사용 기간	피 승인 자		비 고
					주 소	성 명	
2023-42 (2023. 8. 24.)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117-3번지 일원	지방어항 (성두항) 보수보강공사	220	'23. 8. 25. ~ '53. 8. 24.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2023. 8. 25.

여 수 시 장

여수시 어린이도서관 명칭 공모 수상작 선정 결과 공고

「여수시 어린이도서관 명칭 공모 수상작」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일

여 수 시 장

□ 공모 개요

- 공 모 명 : 여수시 어린이도서관 명칭 공모
- 공모기간 : 2023. 5. 3. 09:00 ~ 2023. 5. 16. 18:00
- 수 상 작 : 5점
 - 최우수 1명(40만원), 우수 1명(20만원), 장려 3명(각 10만 원) ※ 여수사랑상품권 지급

□ 수상작 선정결과

순위	시상금	선정 명칭	제출자 (지역)	핸드폰 뒷번호
최우수	40만원	여수꿈바다도서관	김 * 석 (대전)	5694
우 수	20만원	여수 죽림어린이도서관	이 * 희 (여수)	9714
장 려	10만원	산들마루어린이도서관	김 * 원 (서울)	1638
		죽림 꿈나래 어린이도서관	최 * 정 (여수)	4165
		죽림산들도서관	이 * 영 (여수)	1347

※ 수상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릴 예정

※ 최종 명칭은 향후 도서관 명칭 활용과정에서 여수시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공 시 송 달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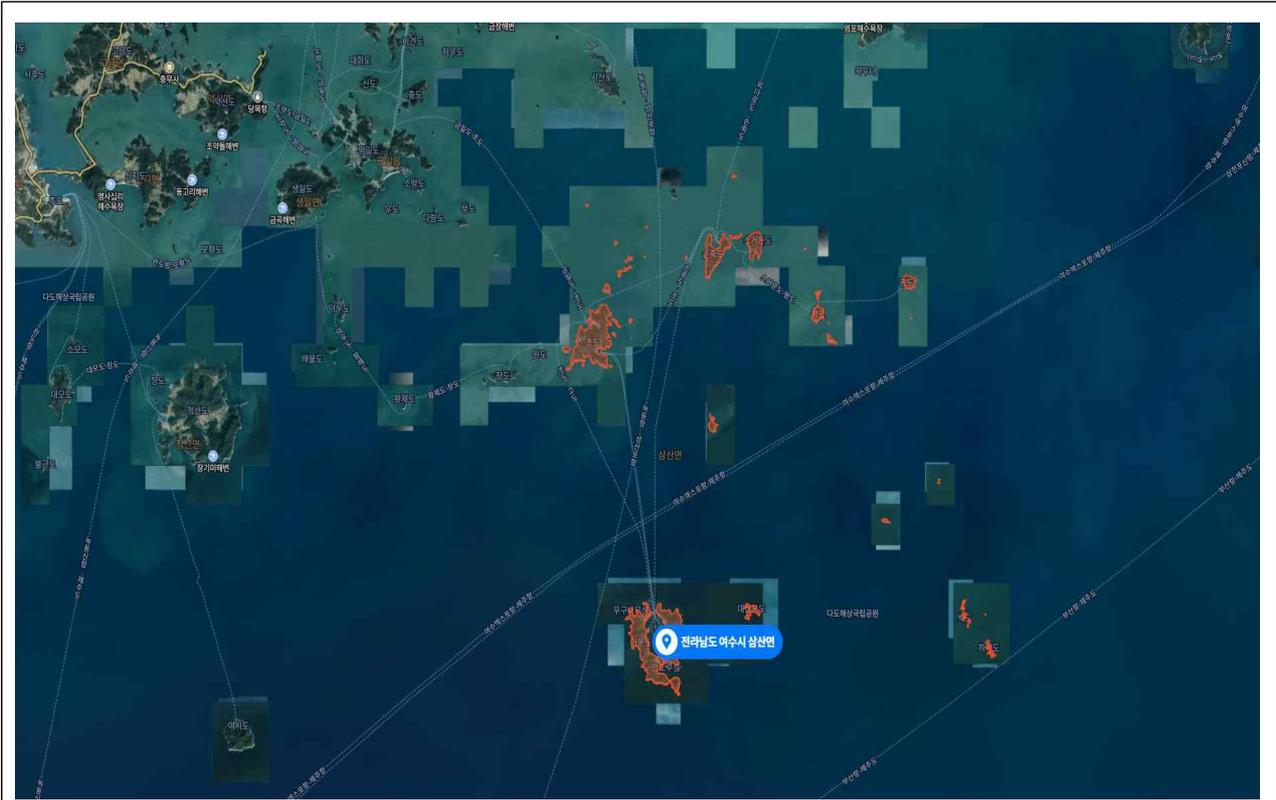
여수시 삼산면 해역 일원에 어업면허(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불법 양식시설물을 설치하여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3년 9월 1일까지 반드시 불법시설물이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하고자 하며,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여 수 시 장 (인)

1. 공고내용: 행정대집행 계고서
2. 공고기간: 2023. 8. 18. ~ 9. 1.(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행정대집행 계고 내역 (별첨: 위치도 1부.)
 -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해역 일원
 - 성 명: 미 상
 - 주 소: 불 명
 - 행정대집행 대상: 불법 양식시설물
 - 여수시 삼산면 해역 일원에 어업면허(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불법 양식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기일 내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철거 하겠으며, 대집행에 소요된 금액은 행정대집행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징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대집행 일시: 2023. 9. 2. ~ 불법 양식시설물 철거완료시까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수산경영과(☎061-659-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여수시 삼산면 해역 일원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21.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582-8번지 일원	화양면 고내항 물양장 설치공사	657	30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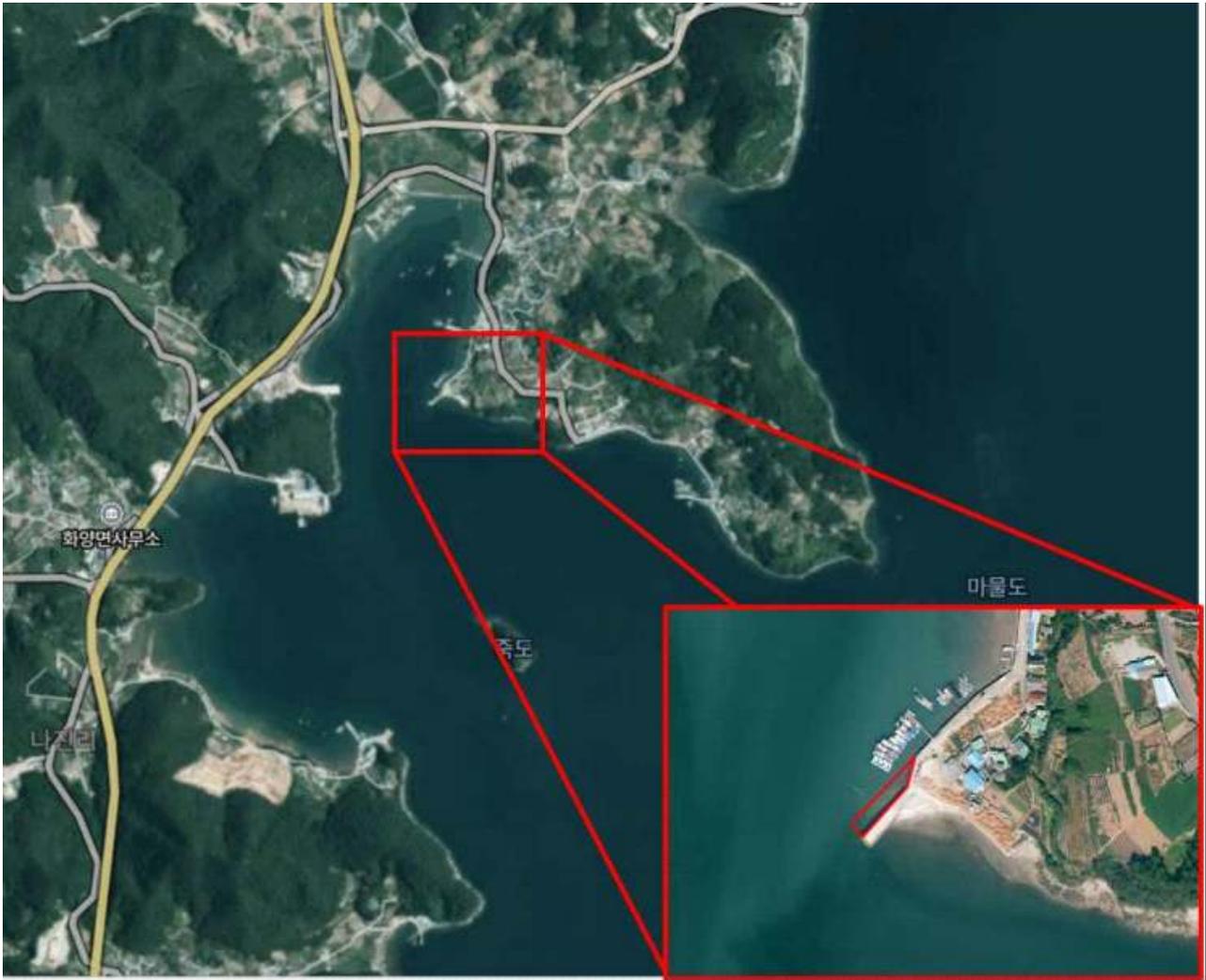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3. 8. 21. ~ 2023. 9. 4.(15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3. 8. 21. ~ 2023. 9. 4.(15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chlsmile1004@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김채린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여수시장(해양정책과)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여수시 교통과 교통정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18.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 구매설치

나. 사업규모 : 무인교통단속장비 5개소 5대

다. 설치목적 :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함.

라. 설치예정 장소

번호	설 치 장 소	설치대수	용 도	비 고
	5개소	5대		
1	GS칼텍스 제품출하팀 앞(여수시 적량동 1155-2)	1	과속	
2	삼성디지털 프라자 앞(여수시 문수동 90-1)	1	신호.과속	후면
3	여수소방서 앞(여수시 학동 97-1)	1	신호.과속	후면
4	공화사거리(여수시 공화동 734-6)	1	신호.과속	
5	통계청사거리(여수시 웅천동 1695-2)	1	신호.과속	후면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게시판

4 행정예고기간 : 2023. 8. 18. ~ 2023. 9. 6. 까지(20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행정예고 기간 내 아래의 의견서를 여수시 교통과 교통정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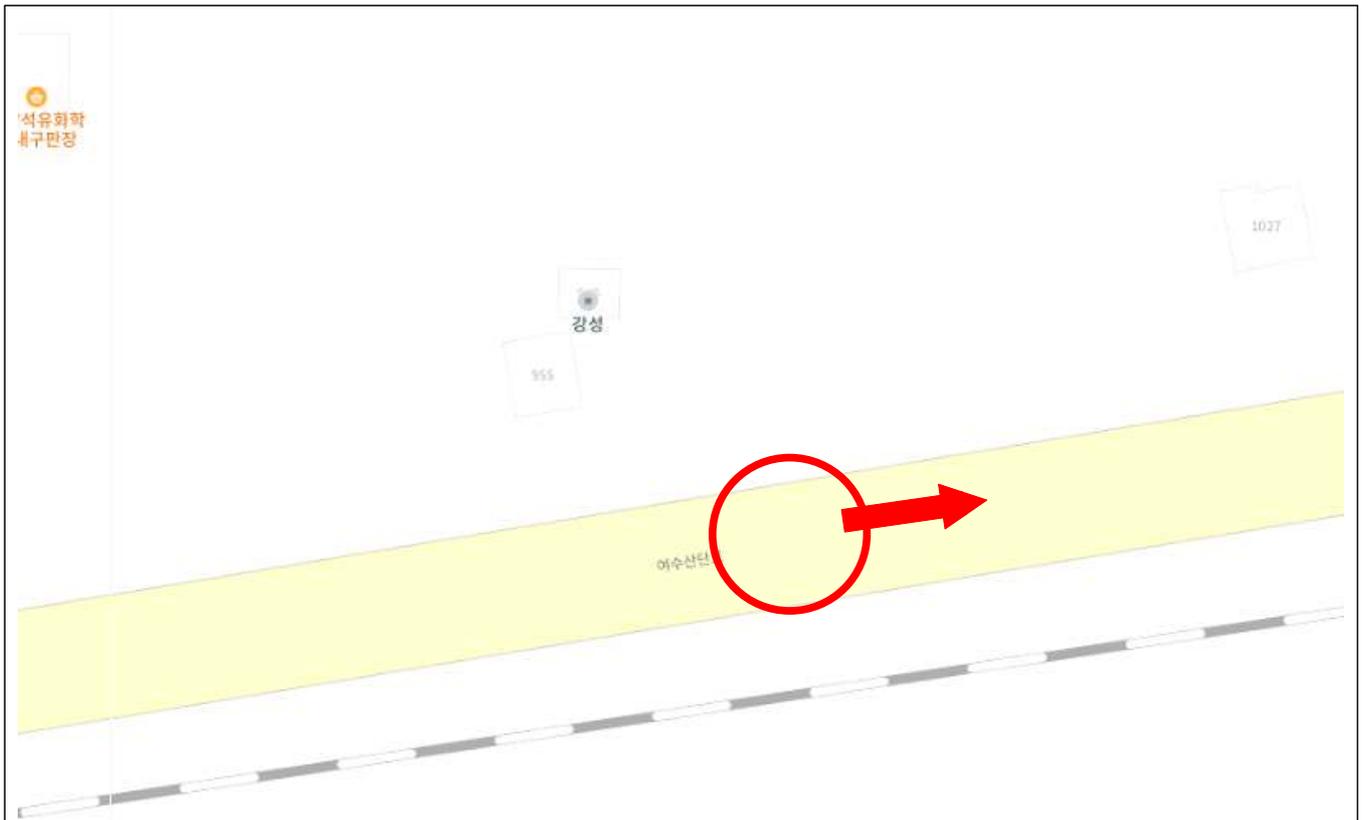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061-659-5837) 등

다. 문 의 처 : 여수시청 교통과(교통정보팀) ☎061-659-4137

라. 제출기관 : 여수시청(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설치장소



GS칼텍스 제품출하팀 앞(여수시 적량동 1155-2)



삼성디지털 프라자 앞(여수시 문수동 90-1)

설치장소



여수소방서 앞(여수시 학동 97-1)



공화사거리(여수시 공화동 734-6)

설치장소



공 고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8. 21.

여 수 시 장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울촌 장도 파크골프장」 신설에 따라 조례에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
-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조례상 미비한 부분 보완 및 명칭 등의 수정, 행정의 간소화로 체육시설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
-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반영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신설 명칭 및 위치, 문구 수정 등(제3조, 제7~9조)

- “울촌 장도 파크골프장” 신설에 따른 이용료 및 소재지 위치 등 관련 근거 규정 마련(별표 1, 별표 2, 별표 4)
- 망마경기장 세부 시설 및 망마국민센터 명칭 수정(별표 1)
- 관련 법률 명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반영 수정

나. 체육시설 부대시설(개인사물함) 보증금 삭제 및 이용료 징수 근거 마련(제7조 별표 2 - 비고)

- 진남수영장·망마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 보증금 삭제(7. 나.)
 - 이용요금(1개월 5,000원) 징수에 따른 보증금 납부 불필요
- 수영장 내 헬스장 이용료 1일권 요금 명시(4. 다.)
 - 1일권 희망 회원에 대한 수요 반영 및 수익 창출 기대
 - 요금: 1일권(2시간 이내) 2,000원

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반영(제9조, 별표 8)

-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 마련: 사용일 기준 7·5,·3,·1일, 당일 취소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1. ~ 2023. 9. 10.(20일간)

5. 의견 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체육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61-659-3255) 또는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가. 주 소 : 우)59715 전남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오림동)
- 나. 받는 사람 : 여수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
- 다. 전화번호 : 061)659-3255, 팩스 061)659-5809
- 라. 이 메 일 : selfzoen@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를 “경우”로, “반환”을 “별표 8에 따라 반환”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한, 그 밖에 시장의 귀책사유”를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장의 귀책으로 인한 이용료 등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세부 시설 명	소재지
진 남 체 육 공 원	· 진남경기장 · 진남체육관 · 야구장 · 실내야구연습장 · 인라인롤러경기장 · 씨름장 · 유도장 · 테니스장 · 실내테니스장 · 국궁장 · 보조운동장 · 족구장 · 게이트볼장 · 진남복합구장 · 진남배드민턴장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오림동)
진 남 수 영 장	· 실내수영장 · 다목적실	여수시 내동1길2 (오림동)
망 마 경 기 장	· 주경기장 · 준비운동장 · 국궁장 · 게이트볼장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시전동)
망 마 국 민 체 육 센 터	· 실내수영장 · 다목적체육관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시전동)
장 애 인 국 민 체 육 센 터	· 다목적체육관 · 체력측정실 · 체력단련실 · 장애인목욕탕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오림동)
홍 국 체 육 관	· 홍국체육관	여수시 선소로 93(학동)
돌 산 체 육 관	· 돌산체육관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18
시 립 테 니 스 장	· 시립테니스장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이 순 신 공 원 테 니 스 장	· 이순신공원테니스장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공원 일대
진 모 축 구 장	· 진모축구장 · 진모그라운드골프장 · 진모리틀야구장 · 진모풋살장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로 196
국 동 복 합 체 육 시 설	· 복합구장	여수시 신월로 648(국동)
율 촌 장 도 파 크 골 프 장	· 율촌장도파크골프장	여수시 율촌면 율촌산단2로 241-55

[별표 2]

일반(연습)이용료(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원)

구 분 시설별		일반인	청소년, 군인, 병역명문가예 우대상자	국가유공자등 제3호 (비고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위탁 세대, 세 자녀 이상 가구, 「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등록자	경로우대자, 어린이, 유아, 장애인	비 고
주경기장	천연	50,000	40,000	25,000	면제	구장당
	보조	40,000	32,000	20,000	〃	〃
보조구장	천연	30,000	24,000	15,000	〃	〃
	보조	25,000	20,000	12,500	〃	구장당 (복합구장 포함)
축구장(국동,진모)		30,000	24,000	15,000	〃	구장당
망마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1,500	1,200	750	〃	1명당
야구경기장		30,000	24,000	15,000	〃	구장당 (리틀야구장포함)
실내야구연습장		20,000	16,000	10,000	〃	실내이용기준
인라인롤러경기장		1,500	1,000	750	〃	1명당
테니스장 (1면당)	실외천연코 트	10,000	8,000	5,000	〃	1면당
	실외하드코 트	10,000	8,000	5,000	〃	〃
	실내하드코 트	15,000	12,000	7,500	〃	〃
진남배드민턴장		1,500	1,200	750		1명당
진남,홍국,돌산 체육권		30,000	24,000	15,000		구장당
족 구 장(실내)		10,000	8,000	5,000	〃	〃
게이트볼장		10,000	8,000	5,000	〃	〃
그라운드골프장		25,000	20,000	12,500	“	구장당
풋살장		25,000	20,000	12,500	“	“
유 도 장		10,000	8,000	5,000	〃	〃
씨 림 장		10,000	8,000	5,000	〃	〃
국 궁 장		1,500	1,200	750	〃	1면당
장애인 국민체 육센터	체력 측정실					장애인에 한함
	체력 단련실					〃
	장애인 목욕탕				2,000	〃
수영장	회원권(월)	60,000	48,000	30,000	30,000	강습료 : 10,000/월
	1회사용	4,000	3,200	2,000	1,500	
울촌장도파크골프장		2,000	1,600	1,000	면제	관외거주자 5,000원

비고

1. 이용시간 :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초과시간 1시간당 해당 이용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하며,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부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토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위 이용료의 150%로 한다.
3. 다음의 각 목의 사람은 일반인 이용료의 50%를 감경한다.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4. 수영장
 - 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수영장 월 회원권 요금의 15%를 감경한다.
 - 나. 단체입장 감경이용료는 1회 사용 시 일반인 3,000원, 청소년·군인·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1,500원으로 한다.
 - 다. 수영장 내 헬스장 사용료 및 에어로빅·요가 강습료는 각각 월 35,000원으로 하며, 헬스장 이용료는 1일 2시간 이내 2,000원으로 한다. 세 가지(헬스장, 요가, 에어로빅)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강습료를 감경하여 월 80,000원으로 한다.(수영장 이용료와 강습료는 제외한다)
 - 라. 수영장 강습료는 월 12,500원으로 한다.
5. 테니스장
 - 가. 테니스장(실외코트에 한정한다)의 월 회원권 요금은 일반인 40,000원, 청소년·군인 30,000원으로 한다. 다만, 테니스 강습을 받는 사람의 경우의 월 회원권 요금은 일반인 월 60,000원, 일반인 외 사람은 월 48,000원으로 한다.
 - 나. 테니스 강습료는 일반인 월 90,000원, 일반인 외 사람은 월 72,000원으로 한다.
6. 장애인국민체육센터
 - 가. 여수시에 등록된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다만, 다목적체육관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다)
 - 나.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유아는 장애인목욕탕 이용 시 이용료의 50%를 감면한다.
 - 다. 장애인목욕탕 중 가족탕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하지절단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며, 동반가족(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을 포함한다) 1명의 사용료는 2,000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감면대상자일 경우 동반가족(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을 포함한다)도 감면대상자에 포함한다.
7. 진남수영장, 망마국민체육센터
 - 가.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이용요금은 월 55,000원으로 한다.
 - 나. 개인용 사물함 이용요금은 월 5,000원으로 한다.

[별표 4]

행사사용료(제7조제2항제1호 관련)

(단위: 원)

시설별		구분	체 육 행 사		일 반 행 사		비 고
			평 일	토요일, 공휴일	평 일	토요일, 공휴일	
주 경 기 장	육상장(트랙)		50,000	75,000	100,000	150,000	
	축구장 (필드)	천연	100,000	150,000	200,000	300,000	구장당
		인조	80,000	120,000	160,000	240,000	"
보조구장		천연	60,000	90,000	120,000	180,000	"
		인조	50,000	75,000	100,000	150,000	구장당 (복합구장 포함)
축구장(국동, 진모)			60,000	90,000	120,000	180,000	구장당
실 내 체 육 관			60,000	90,000	120,000	180,000	다목적 체육관 포함
야 구 경 기 장			60,000	90,000	-	-	구장당 (리틀야구장포함)
실내야구연습장			40,000	60,000	-	-	구장당
인라인롤러경기장			60,000	90,000	-	-	"
테니스장	실외천연코트		20,000	30,000	-	-	1면당
	실외하드코트		20,000	30,000	-	-	"
	실내하드코트		30,000	45,000	-	-	"
진남배드민턴장			12,000	18,000			1면당
망마국민체육센터 (배드민턴장)			12,000	18,000			1면당
족 구 장(실내)			20,000	30,000	-	-	"
게 이 트 볼 장			20,000	30,000	-	-	"
그라운드골프장			50,000	75,000	100,000	150,000	구장당
풋 살 장			50,000	75,000	100,000	150,000	"
유 도 장			40,000	60,000	-	-	"
씨 림 장			40,000	60,000	-	-	"
국 궁 장			40,000	60,000	-	-	"
울촌장도파크골프장			50,000	75,000	100,000	150,000	

비고

1. 사용시간 : 기본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초과 시간 1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2. < 삭 제 2022. 9. 2.>
3. 행사 참여인원(선수 및 사용자 측의 참여인원 등 행사 개최에 필요한 모든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 가. 행사 참여인원이 100~499명인 경우 해당 사용료의 30%
 - 나. 행사 참여인원이 500~999명인 경우 해당 사용료의 50%
 - 다. 행사 참여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해당 사용료의 70%
4. 행사시설물의 사전 설치 및 철거를 위한 사용료는 행사 사용료의 50%로 한다.

[별표 8]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내 용	반 환 기 준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이용료 등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	이용료 등 총액의 20% 공제 후 반환
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	이용료 등 총액의 30% 공제 후 반환
사용 당일 취소	반환금액 없음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2일 이상 행사 이용시)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미사용기간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일반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본항 신설 2021. 3. 15.></p> <p>1. ~ 3. (생략)</p> <p>4. 「<u>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5. 「<u>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6. ~ 8. (생략)</p> <p>④ (생략)</p> <p>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이용료 등을 반환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5조에 따라 이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이용 또는 사용을 취소할 경우</p>	<p>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8조의3 ----- -----</p> <p>5. 「<u>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2조제1항 ----- -----</p> <p>6. ~ 8.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 ----- --.</p> <p>1. ----- ----- ----- <u>경우</u> -----</p>

다음 각 목에 따라 징수한 이
용료 등을 반환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
까지 취소 : 이용료 등 총
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사용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과 총 이용료 등의 10퍼센
트를 공제한 후 반환

2. (생략)

3. 제13조에 따른 개방 중지나
제14조에 따른 이용·입장 제
한, 그 밖에 시장의 귀책사유
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용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4. (생략)

<신설>

----- 별표

8에 따라 반환

<삭제>

<삭제>

<삭제>

2. (현행과 같음)

3. -----
----- 제한으-----

4. (현행과 같음)

5. 시장의 귀책으로 인한 이용
료 등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
육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한
다.

신·구조문대비표(별표)

현 행						개정안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세부 시설 명		소재지		명 칭		세부 시설 명		소재지	
진남체육공원		(생 략)				진남체육공원		(생 략)			
진남수영장						진남수영장					
망마경기장		· 주경기장 · 준비운동장 · 국궁장 · 게이트볼장 · 국민체육센터				망마경기장		· 주경기장 · 준비운동장 · 국궁장 · 게이트볼장 · 국민체육센터			
망마국민센터		(생 략)				망마국민체육센터		(생 략)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장애인국민체육센터					
홍국체육관						홍국체육관					
들산체육관						들산체육관					
시립테니스장						시립테니스장					
이순신공원테니스장						이순신공원테니스장					
진모축구장						진모축구장					
국동복합체육시설						국동복합체육시설					
(신 설)						(신 설)					
						울촌장도파크골프장		울촌장도파크골프장		여수시 울촌면 울촌산단2로 241-55	
(별표 2) 일반(연습) 이용료						(별표 2) 일반(연습) 이용료					
구분		일반인		국가유공자등 (비고 제외)		구분		일반인		국가유공자등 (비고 제외)	
시설별		청소년, 군인,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		고령자, 임종환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애인, 유아, 장애인		시설별		청소년, 군인,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		고령자, 임종환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애인, 유아, 장애인	
주경기장		천연		(생 략)		주경기장		천연		(현행과 같음)	
		보조						보조			
보조구장		천연				보조구장		천연			
		보조						보조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울촌장도파크골프장		2,000		1,600	
										1,000	
										면제	
										관외 거주자 5,000원	
비고						비고					
1.~3. (생략)						1.~3. (생략)					
4. 가.~나. (생략)						4. 가.~나. (생략)					
다. 수영장 내 헬스장 사용료 및 에어로빅·요가 강습료는 각각 월 35,000원으로 하며, 세 가지(헬스장, 요가, 에어로빅)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강습료를 감경하여 월 80,000원으로 한다.(수영장 이용료와 강습료는 제외한다)						다. 수영장 내 헬스장 사용료 및 에어로빅·요가 강습료는 각각 월 35,000원으로 하며, 헬스장 이용료는 1일 2시간 이내 2,000원으로 한다. 또한, 세 가지(헬스장, 요가, 에어로빅)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강습료를 감경하여 월 80,000원으로 한다.(수영장 이용료와 강습료는 제외한다)					
라. (생략)						라. (생략)					
5.~6. (생략)						5.~6. (생략)					
7. 가.(생략)						7. 가.(생략)					
나. 개인용 사물함 이용요금은 보증금 10,000원에 월 5,000원으로 한다.						나. 개인용 사물함 이용요금은 보증금 10,000원에 월 5,000원으로 한다.					

현 행

(별표 4) 행사사용료

구분 시설별	체 육 행 사		일 반 행 사		비 고
	평 일	토요일, 공휴일	평 일	토요일, 공휴일	
(생 략)			-	-	
(생 략)	-	-	-	-	
(생 략)	-	-	-	-	
(신 설)					

비고

1. ~ 4. (생략)

(별표 8) 신 설

개정안

(별표 4) 행사사용료

구분 시설별	체 육 행 사		일 반 행 사		비 고
	평 일	토요일, 공휴일	평 일	토요일, 공휴일	
(생 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생 략)	-	-	-	-	
(생 략)	-	-	-	-	
울촌장도파크 골프장	50,000	75,000	100,000	150,000	

비고

1. ~ 4. (현행과 같음)

(별표 8)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내 용	반 환 기 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 등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 등 총액의 20% 공제 후 반환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 등 총액의 30% 공제 후 반환
사용 당일 취소	반환금액 없음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2일 이상 행사 이용시)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미사용기간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식업 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양식업의 종류	시설 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양식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11935	패류양식	수하식 (수하연식)	10.00	화양 안포	2023.08.21. 2026.07.19.	291.6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	이*광 외 2	11702호 대체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3. 08. 21.

여 수 시 장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등록말소) 대상 업체

상 호 (대표자)	해당업종 (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시티종건(주) (김광호)	시설물유지관리업 (무안06-29-01)	영업정지 5개월 (2023.08.21.~ 2024.01.20.)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제83조2제3호

2. 공고 기간: 2023. 8. 21. ~ 2023. 9. 4.(14일간)

3. 공고 장소: 여수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기 타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하여 건설산업 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직근 상급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1일

여 수 시 장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등록말소) 대상 업체

상 호 (대표자)	해당업종 (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주)한려종합개발 (이은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여수2011-06-04)	영업정지 5개월 (2023.08.21.~ 2024.01.20.)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제83조2제3호

2. 공고 기간: 2023. 8. 21. ~ 2023. 9. 4.(14일간)

3. 공고 장소: 여수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기 타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하여 건설산업 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직근 상급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1일

여 수 시 장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928-68번지 건축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2. 8. 21.

여 수 시 장

1. 위 치 : 돌산읍 평사리 928-68번지
2. 도로면적 : 106㎡
3. 도로길이 : 22m
4. 도 로 폭 : 2.8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513	106	
	돌산읍 평사리	928-68	임야	1,513	106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 첨]

2023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따라 2023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정기분 고지서를 공유수면 점용·사용자에게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여 수 시 장

1. 제 목 : 2023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대상자	주소	점용·사용 장소	부과금액
1	이*호	여수시 화양면 꽃다리길 53-15	소호동 505-2번지 지선	901,600원
2	김*식	여수시 소호로 206	돌산읍 평사리 1020-20번지	811,580원
3	(유)남진해운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482	화양면 나진리 526-3번지 지선	1,395,000원

4. **공시송달기간 : 2023. 8. 22. ~ 2023. 9. 6. (15일간)**

5. 기타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여수시청 해양정책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 해양정책과(☎061-659-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구역 결정(울촌중학교 앞 도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울촌중학교 앞 도로확장(시도16호선)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을 위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민 및 이해 관계관계인에게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3일

여 수 시 장 (인)

1. 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울촌중학교 앞 도로확장 도로구역 결정용역	전남 여수시 조화리 136-11번지 일원	○ 면적 및 규모 - 면적: 8,346.1㎡ - 규모: L=170m, B=12m	여수시장/ 여수시 시청로 1

2. 도로 구역을 결정·변경하려는 사유

- 본 사업은 울촌중학교 일원 시도16호선 내 보도단절구간에 대하여 도로확장을 통한 보도 설치로 지역주민 등 통학생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3-1.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열람

- 열람기간 : 2023. 7.24. ~ 2023. 8.7.(14일간)
- 열람장소 : 여수시 도로과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 1길23 1층(학동))
- 열람방법 : 여수시 도로과에 비치된 자료 열람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열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열람기간 종료일까지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열람장소에 제출
- 문 의 처 : 여수시 도로과(☎061-659-4076)

5.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붙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도로과 (☎061-659-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1β)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 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매용
1	울촌면 월산리	325-9	도	46	46	조화리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월산리 325-7			
2	“	325-6	도	324	6	건설부	국			
3	“	326-6	도	76	76	여수시	공			
4	“	326-10	도	63	60	건설부	국			
5	“	1363-4	도	1,400	136	건설부	국			
6	“	326-2	도	30	30	채원식	돌산면 죽포리			
7	“	326-9	학	217	217	여수시	공			
8	“	326-5	도	466	376	여수시	공			
9	울촌면 조화리	897-1	도	4	4	기획재정부	국			
10	“	444-7	도	120	111	박연례 외1인	순천시 장천동 137			
11	“	862-22	도	91	91	국토교통부	국			
12	“	862-23	도	9	9	국토교통부	국			
13	“	441-1	도	7	7	여수시	공			

○ 토지조서 (2β)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 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매용
14	울촌면 조화리	442-5	도	326	326	정기욱 외 2인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월산리 101			
15	“	136-17	학	413	413	여수시	공			
16	“	136-18	도	91	91	지재한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119			
17	“	136-15	도	265	265	오정수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14번길 6, 101동 402호(상동,상지비버리힐스)			
18	“	136-21	대	20	20	김정환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136			
19	“	136-7	도	33	33	여수시	공			
20	“	136-20	대	39	39	정삼훈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136-12			
21	“	136-16	대	18	18	여수시	공			
22	“	439-6	전	1	1	여수시	공			
23	“	136-19	대	24	24	장지윤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136-11			
24	“	438-3	도	13	13	박옥신	순천군 순천읍 금곡동 66			
25	“	438-14	대	17	17	주순덕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913			

○ 토지조서 (3β)

일련 번호	소재 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 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매용
26	울촌 면 조화리	438-15	도	11	11	이기봉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428			
27	"	227-6	도	16	4	김두만 외2인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401			
28	"	862	도	16,820	50	건설부	국			
29	"	227-3	도	202	130	여수시	공			
30	"	137-2	도	23	23	여수시	공			
31	"	227-1	도	195	18	여수시	공			
						이	하 빈	칸		

**울촌중학교 앞 도로확장(시도19호선)
도로구역 결정에 관한 주민의견 제출서**

사 업 명	울촌중학교 앞 도로확장(시도19호선)	
위 치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136-11번지 일원	
의견제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도로구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공고 제2023-2425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 진흥법」규정에 따른 발주자가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8월 22일

여수시장

1. 관련근거

- 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 마.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연번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1	(주)미스터스트럭처 기술사무소	김장윤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72, 416호	건축
2	(주)대한구조안전기술단	정호철	전라남도 나주시 금당길 31	건축
3	엘씨안전연구소(주)	김순호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64-72, 상가동 104호	건축
4	(주)정진이앤씨	정찬욱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산로 130-48, 3층	건축
5	(주)우리안전기술원	정승호 윤영창	전라남도 순천시 고지5길 3	건축
6	주식회사 다운에스텍	진선용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약4로 49, 702호	건축
7	대한건설기술단주식회사	김보현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317	건축

도로 지정(변경) 공고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산 388-15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변경)·공고합니다.

2023. 8.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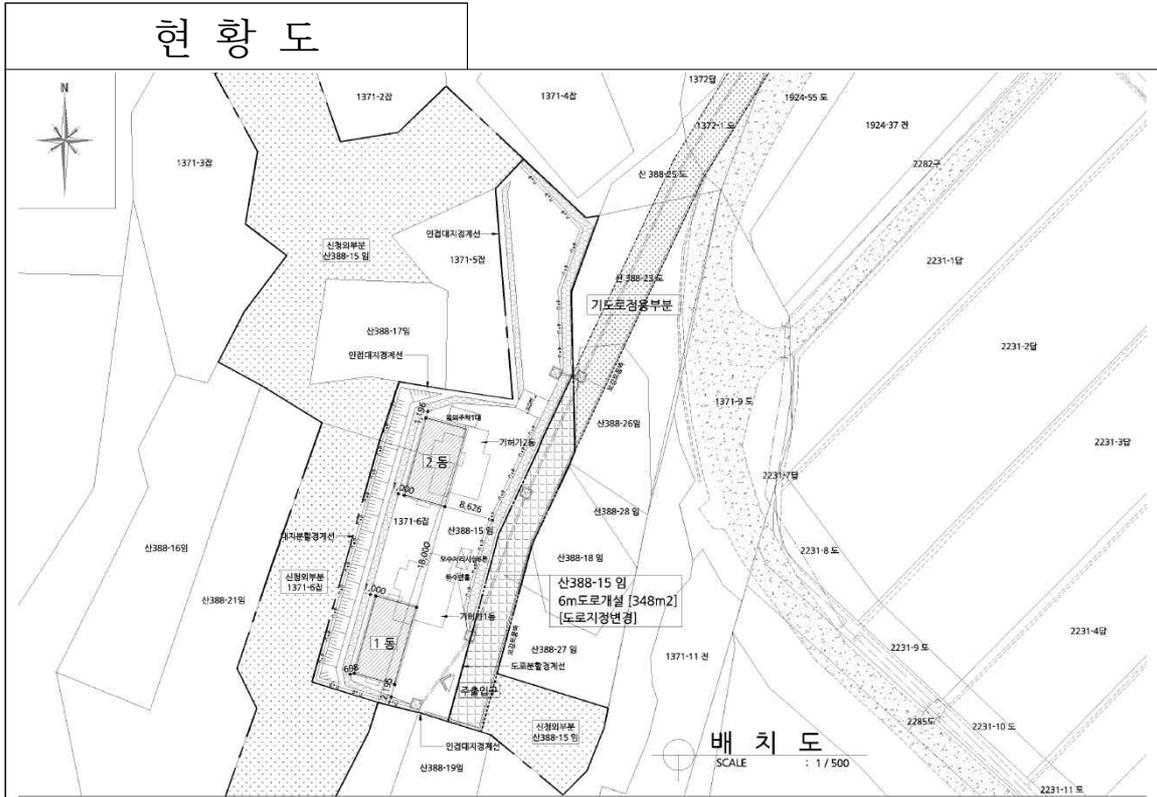
여 수 시 장

1. 위 치 : 소라면 복산리 산 388-15번지
2. 도로면적 : 348㎡
3. 도로길이 : 64m
4. 도 로 폭 : 6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당초	계				346㎡	
변경	계				348㎡	
당초	소라면 복산리	산 388-15	임야	3,540㎡	346㎡	
변경	소라면 복산리	산 388-15	임야	3,621㎡	348㎡	면적변경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첨]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2022년도 지적재조사 지구(돌산 우두·금봉·둔전, 소라 덕양)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수취인 불명·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한 불임 대상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861명 (우두리 394, 금봉리 103, 둔전리 83, 덕양리 281)
2. 공고기간: 2023. 8. 23.~2023. 9. 6.(15일간)
3. 공고장소: 여수시 시보, 홈페이지, 돌산읍·소라면 게시관
4. 기타사항: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1-659-3474, 34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8. 23.

여 수 시 장(인)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23.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87번지 일원	돌산읍 두룡개항 방파제 연장공사	2,645	30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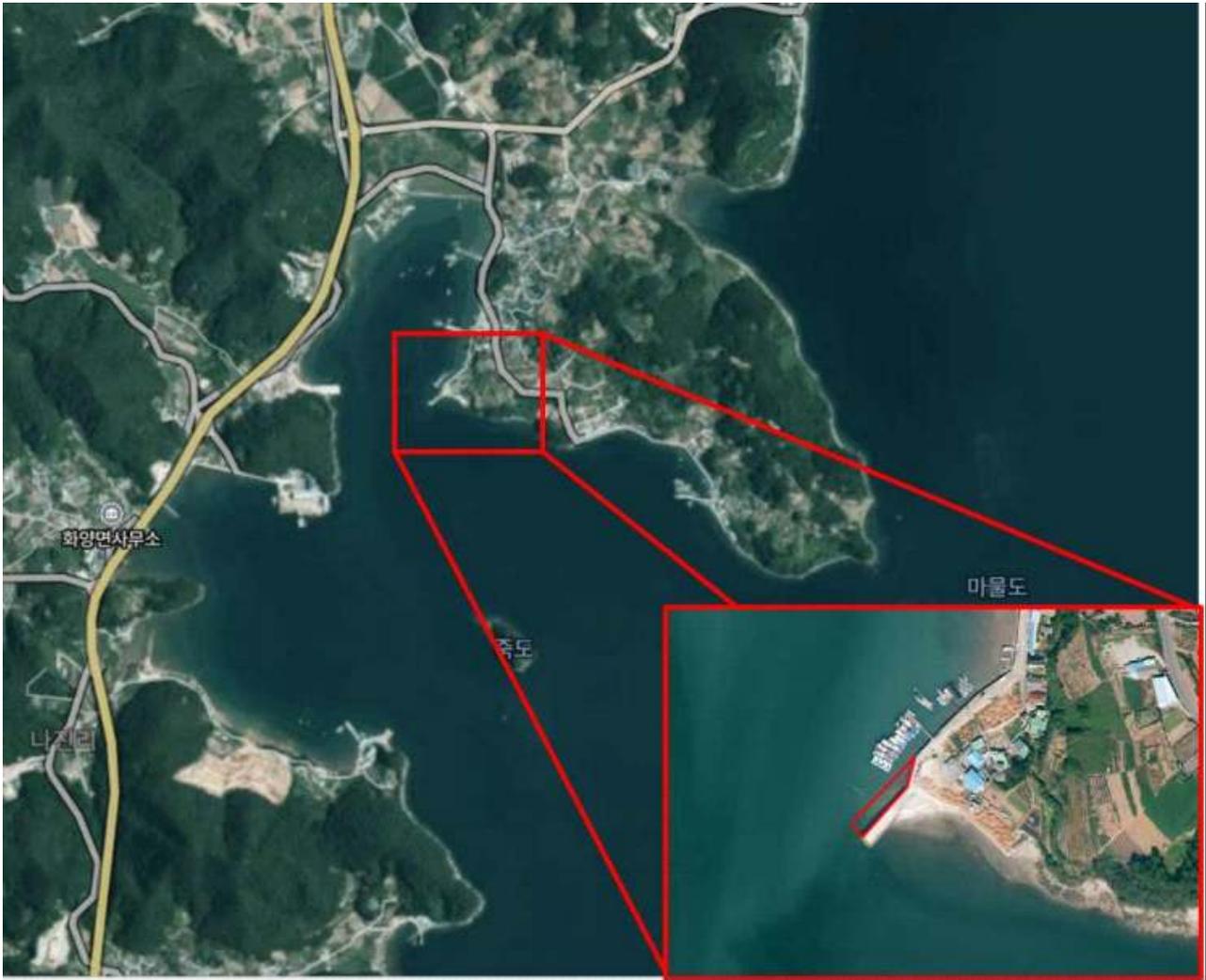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3. 8. 23. ~ 2023. 9. 8.(17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3. 8. 23. ~ 2023. 9. 8.(17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출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chlsmile1004@korea.kr)
- 담당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김채린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여수시장(해양정책과)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23.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주)쏘일테크 엔지니어링	여수시 신덕동 산160 지선 공유수면(5개소)	여수 ~ 남해 국도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중 지반조사	1,125㎡(바지선) (시료 채취량 0.6804㎡)	허가일로부터 60일

* 점용·사용 장소(위치 및 좌표)는 붙임1 참고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3. 8. 24. ~ 2023. 9. 12.(20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3. 8. 24. ~ 2023. 9. 12.(20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추어 제출
- 제출처: 해양정책과(여수시 신월로 648, 4층) 또는 전자우편(OJH0308@korea.kr)
- 담당자: 공유수면관리팀 오종혁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061-659-397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좌표

셀파이엔씨(주) 신청위치 및 좌표

조사위치도



공번별 좌표

공 번	좌 표		공 번	좌 표	
	위 도	경 도		위 도	경 도
1	34° 49' 21,62"	127° 46' 31,98"	8	34° 49' 43,33"	127° 47' 58,93"
2	34° 49' 24,42"	127° 46' 43,33"	9	34° 49' 45,86"	127° 48' 11,29"
3	34° 49' 26,02"	127° 46' 50,13"	10	34° 49' 46,75"	127° 48' 26,60"
4	34° 49' 29,21"	127° 47' 02,94"	11	34° 49' 55,15"	127° 48' 43,28"
5	34° 49' 33,10"	127° 47' 17,95"	12	34° 50' 00,05"	127° 48' 47,76"
6	34° 49' 36,56"	127° 47' 31,61"	13	34° 49' 44,62"	127° 48' 45,22"
7	34° 49' 38,05"	127° 47' 37,55"	14	34° 49' 40,95"	127° 48' 57,3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여수시장(해양정책과)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여수시 공고 제2023-2440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본 조례 제정 이후(1998. 4. 4.) 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근거법령인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들을 정비하여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개정 및 대상 범위 한정
- 안 제2조(정의)
: “직무발명”의 정의 구체화 및 문구 조정
- 안 제3조(권리의 승계) 1항
: 직무발명의 의무 승계의 예외 조항 추가
- 안 제12조(특허권의 등록)
: 관련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개정
- 안 제15조(등록보상금) 제3호
: 관련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안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 보상금의 불반환 예외 적용 문구 정비

○ 안 제23조(위원회의 설치)

: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 예고기간 : 2023. 8. 23. ~ 9. 12.(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라. 제출기관 : 여수시장(기획예산담당관)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1(학동),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
- 팩 스 : 061-659-5813
- 전자메일 : smy486@korea.kr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 061-659-34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여수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호장려하며**”를 “**보호·장려하며**”로, “**여수시(이하“시”라 한다)**”를 “**여수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한**”으로, “**업무에 속하는**”을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을 “**“개인발명”이라 함은 제1호**”로 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쟁중이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제4조 중 “**제3조의**”를 “**제3조**”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제1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을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의 규정**”을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제6조의 규정**”을 “**제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제23조의 규정**”을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의 규정**”을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76조의 규정**”을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로 한다.

제14조 중 “제13조의 규정”을 “제13조”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제3호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 규정”을 “제12조”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를 각각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제17조 중 “제12조의 규정”을 “제12조”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8조 중 “제17조의 규정”을 “제17조”로 한다.

제20조 중 “제16조의 규정”을 “제16조”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제16조의 규정”을 “제16조”로 한다.

제22조 단서 중 “다만, 특허가 모인에 의하여”를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특허가”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여수시 직무발명보상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직무발명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24조의 제목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4조제1호 중 “제11조의 규정”을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5조의 규정”을 “제25조”으로, “자유발명”을 “개인발명”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규정한”을 “다른”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하고 제1항 중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한다.

제28조 중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를 “승계여부와 그 내용 및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직무발명</u>”이라 함은 <u>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u></p> <p>2. “<u>자유발명</u>”이라 함은 <u>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u></p> <p>3. (생략)</p> <p>제3조(권리의 시 승계)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 「<u>발명진흥법</u>」 <u>제10조 및 제15조</u>----- <u>여수시에 소속하는 공무원</u>----- ----- <u>보호</u> <u>· 장려하며</u> ----- ----- -- <u>여수시</u>----- -----.</p> <p>제2조(정의) ----- -----.</p> <p>1. ----- <u>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한</u> ----- ----- <u>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u> ----- -----.</p> <p>2. “<u>개인발명</u>”이라 함은 <u>제1호</u>----- -----.</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권리의 시 승계) ① ----- ----- -----</p>

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여부를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분쟁중이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 제3조

-----.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른 -

-----.

제6조(발명의 신고) -----
----- 지
체 없-----
-----.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 제
10조제2항-----

-----.

② ----- 제1항-----

-----.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출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 ① 시장은 제9조의

제8조(권리의 양도) -----

----- 지체 없-----
-----.

제9조(출원) ① 제8조-----

-----.

② ----- 제1항-----

-----.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
제7조-----

----- 해당 -----

-----.

② --- 단서-----
----- 제6조-----
-----.

제11조(심의요청) ① ----- 제9조-----

규정에 따른 특허 출원이 등록 사정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
 -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등록 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23조 -----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 -----

② ----- 제1항 -----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등록 보상금의 지급) -----

제13조 -----

제15조(등록보상금) -----

----- 각 호 -----

1. ~ 2. (생략)

3. 의장권 :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
거나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
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인한 수입금
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
는 그 대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
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 직무발명을 스스로 실시하거
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여
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7조(특허권의 처분통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
여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시장에게 통고하여
야 한다.

제18조(처분보상금의 지급 심의요청)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
를 받았을 때에는 직무발명보상심의

1. ~ 2. (현행과 같음)

3. 디자인권 -----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

-- 그 밖의 -----

-----.

1. -----
----- 20퍼센
트 이상 30퍼센트 이하-----
--

2. -----
-----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

3. -----

- 제1호-----

제17조(특허권의 처분통지) 제12조--
----- 그
밖의 -----
-----.

제18조(처분보상금의 지급 심의요청)
---- 제17조-----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한 지급 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 5. (생략)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8조(직무발명 상황통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2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
2. 제25조-----개인발명-----
3. ----- 따른 -----
4. · 5. (현행과 같음)

제25조(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발명-----

② 제1항-----

-- 또는 -----.

제28조(직무발명 상황통고) -----
----- 승계여부와 그 내용 및
그 밖의 -----
-----.

도로 지정(변경) 공고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52-5번지 건축신고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변경)·공고합니다.

2022. 8. 23.

여 수 시 장

1. 위 치 : 돌산읍 평사리 1252-40번지
2. 도로면적 : 290m²
3. 도로길이 : 50m
4. 도 로 폭 : 4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290	290	
	돌산읍 평사리	1252-40	전	290	290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73-1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3. 8.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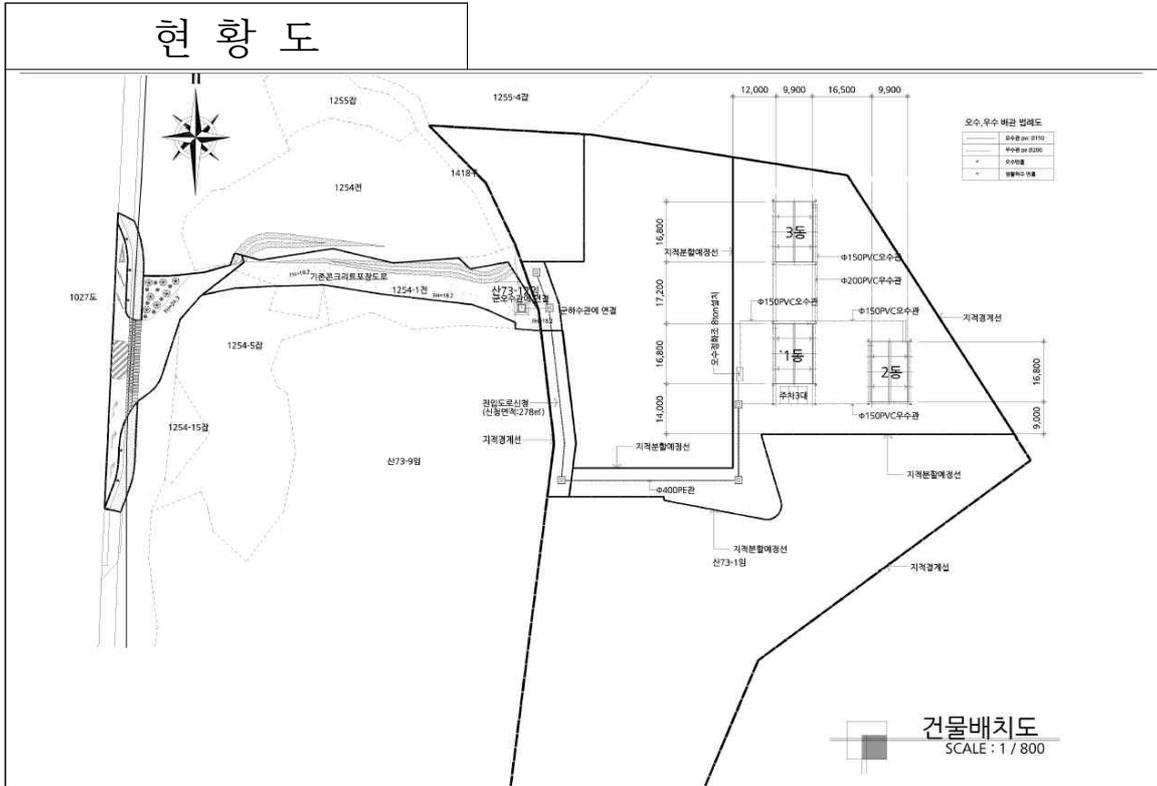
여 수 시 장

1. 위 치 : 소라면 덕양리 산 73-1번지
2. 도로면적 : 278m²
3. 도로길이 : 46m
4. 도 로 폭 : 6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278	
	소라면 덕양리	산73-1	임	18,181	278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첨]



공 고

「해양경찰학교 여수시 이전사업 보상업무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여 수 시 장

「해양경찰학교 여수시 이전사업 보상업무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 해양경찰학교 이전 용지 매수 보상 및 특별회계 정산 완료되어 폐지 (부칙 제2조)

2. 주요 내용

- 「해양경찰학교 여수시 이전사업 보상업무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 별첨

4. 예고기간 : 2023. 8. 25. ~ 9. 14. (20일간)

5. 의견 제출

- 가.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공영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 사항 등

- 1) 주 소 : 우)59761 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
- 2) 전 화 : 061)659-4587, 팩스 : 061)659-5850
- 3) 이메일 : dothome1@korea.kr
-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해양경찰학교 여수시 이전사업 보상업무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해양경찰학교 여수시 이전사업 보상업무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해양경찰학교 여수시 이전사업 보상업무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24.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582-8번지 일원	화양면 고내항 물양장 설치공사	886.4	30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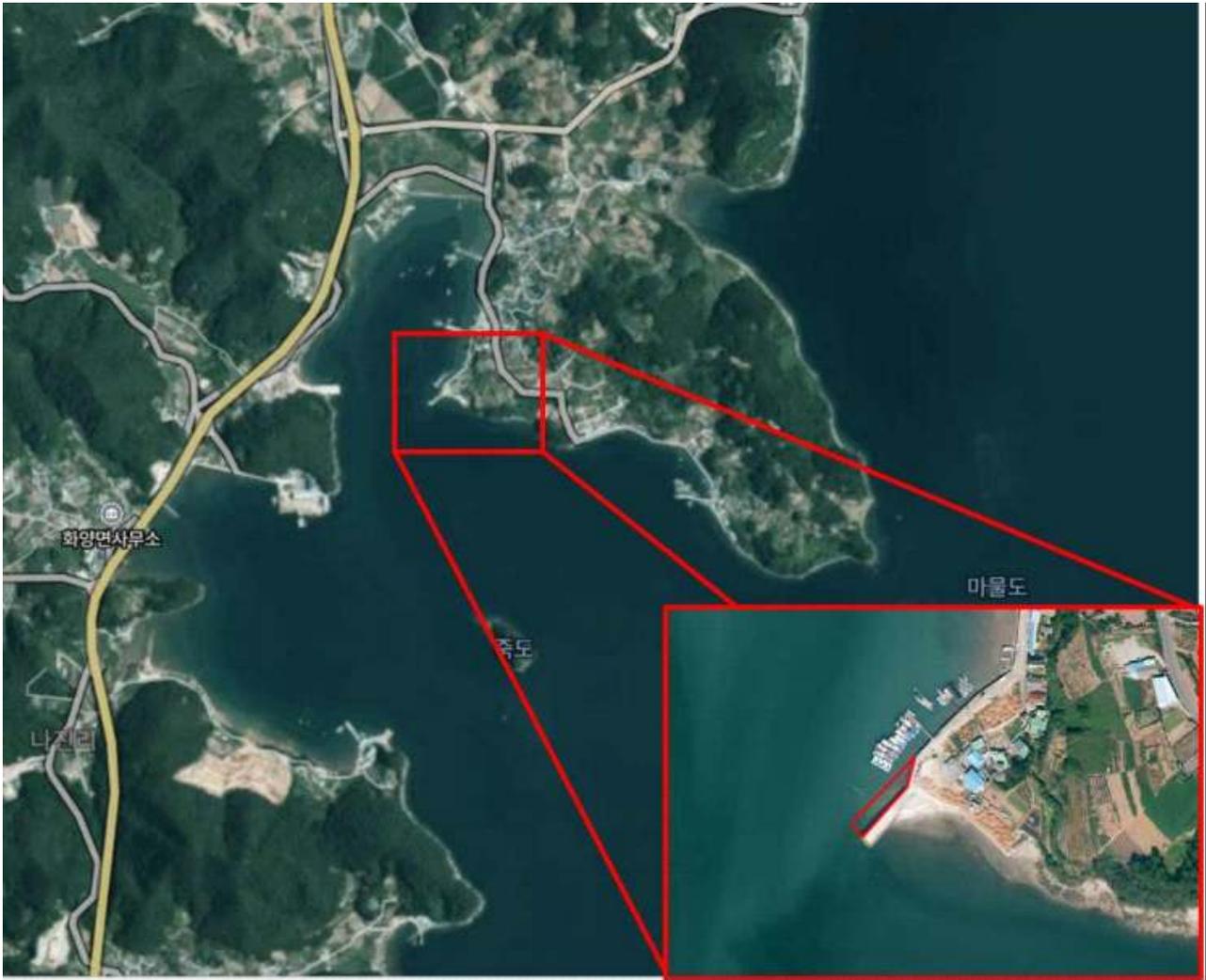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3. 8. 24. ~ 2023. 9. 8.(15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3. 8. 24. ~ 2023. 9. 8.(15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출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chlsmile1004@korea.kr)
- 담당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김채린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여수시장(해양정책과)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전문건설업체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등록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1의2 에 따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실효되어 소명자료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업체

상 호 (대표자)	해당업종	영업소재지	소명자료 제출내용	관련법
기린건설(주) (육항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여수시 미평3길 48 2층	보증가능금액실효 에 따른 소명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1의2

2. 공고 기간 : 2023. 8. 23. ~ 9. 6. (14일간)

3. 자료제출기간 및 제출 처 : 2023. 8. 11. ~ 8. 25. (14일간)여수시청 도시계획과

4. 소명 자료제출목록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5. 공고 장소 : 전국 시·군·구(광역시제외)홈페이지 및 게시판 여수시 시보 및 홈페이지

6. 기 타

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실효되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충족여부를 확인하고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2023. 9. 6.까지 우리 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3일

여 수 시 장

공 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여수시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 및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선정 결과 및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여 수 시 장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선정 및 명단 공고

1. 공고기간 : 2023. 8. 25. ~ 9. 8.(15일간)
2. 선정결과

연번	구 분	성명(성별)	위촉기간	비고
1	위촉직	김남용(남)	2023. 8. 25. ~ 2025. 2. 14.	

※기 구성된 위원회 잔여기간 위촉

3. 위원명단 : 별첨
4. 위원역할 : 다음사항 심의·의결
 -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5. 문의사항 : 민원지적과 지가관리팀(☎ 061-659-3361)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명단

(2023. 8. 25.기준)

연번	직 위	성 명 (성별)	위원임기	위촉구분	비 고
1	위 원 장	김종기 (남)	재직기간	당연직	여수시
2	부위원장	한광민 (남)	"	당연직	"
3	위 원	유환춘 (남)	"	당연직	"
4	"	최윤모 (남)	"	당연직	"
5	"	이영호 (남)	"	당연직	"
6	"	배종일 (남)	"	당연직	여수세무서
7	"	정신출 (여)	2022. 8. 10. ~ 2025. 2. 14.	위촉직	여수시의원
8	"	김남용 (남)	2023. 8. 25. ~ 2025. 2. 14.	위촉직	감정평가사
9	"	박태석 (남)	2022. 2. 15. ~ 2025. 2. 14.	위촉직	세무사
10	"	성승철 (남)	2022. 2. 15. ~ 2025. 2. 14.	위촉직	법무사
11	"	곽선영 (여)	2022. 2. 15. ~ 2025. 2. 14.	위촉직	공인중개사
12	"	강생훈 (남)	2022. 2. 15. ~ 2025. 2. 14.	위촉직	공인중개사
13	"	배상필 (남)	2022. 2. 15. ~ 2025. 2. 14.	위촉직	공인중개사
14	"	김혜경 (여)	2022. 2. 15. ~ 2025. 2. 14.	위촉직	관리사무소장
15	"	이화선 (남)	2022. 2. 15. ~ 2025. 2. 14.	위촉직	지역인사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25.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1302-3번지 일원	화양면 대서이항 방파제 연장공사	423.8	30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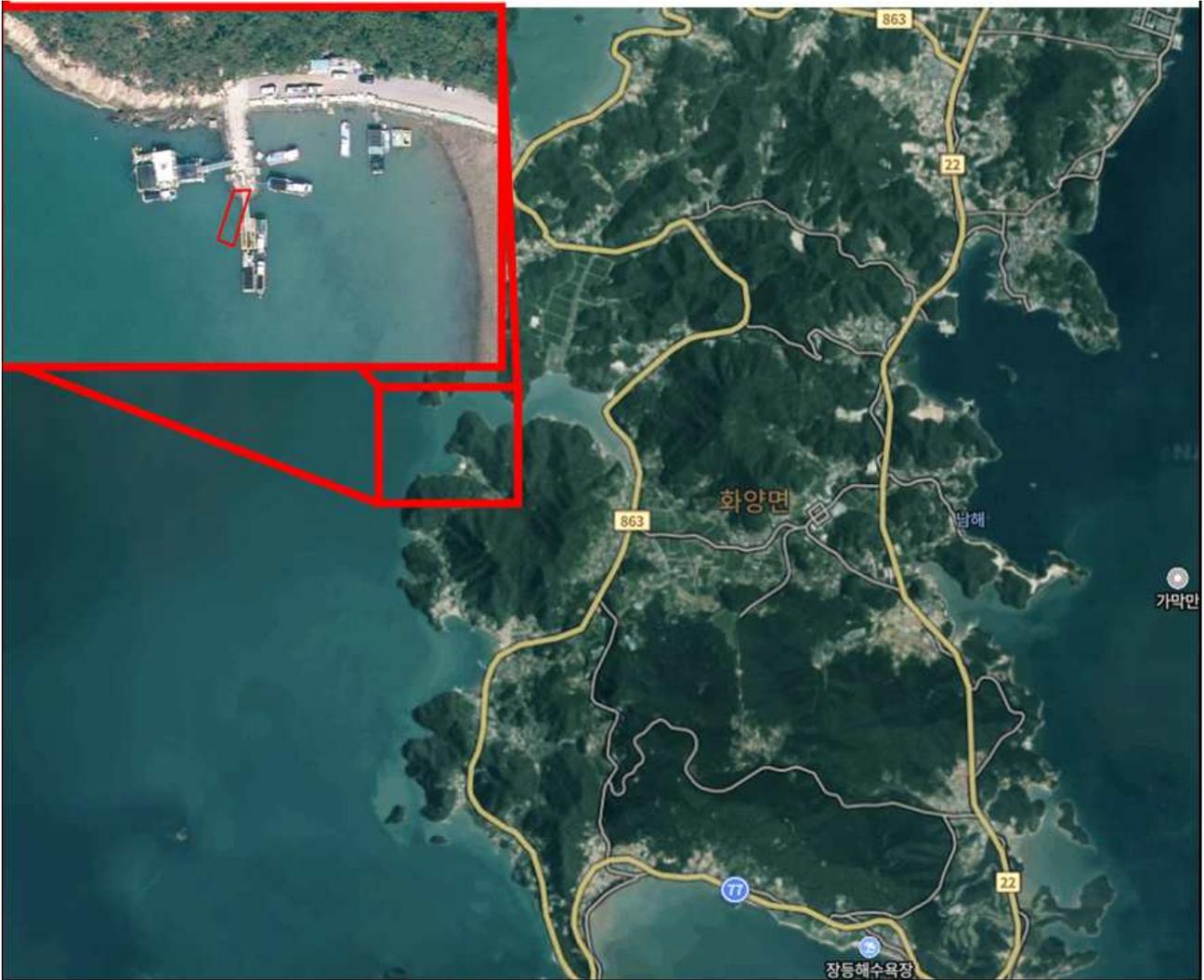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3. 8. 25. ~ 2023. 9. 13.(20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3. 8. 25. ~ 2023. 9. 13.(20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출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chlsmile1004@korea.kr)
- 담당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김채린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여수시장(해양정책과)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